

[별표5]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제14조제1항, 제36조의3제8항 관련)

【단위: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3개월까지	7.5만원	4.8만원	3.2만원	2.7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13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7개월 이상 초과	16만원	7만원	5만원	4만원	

1.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면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 <삭 제>
3.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